「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」 2단계 확대 시행 안내 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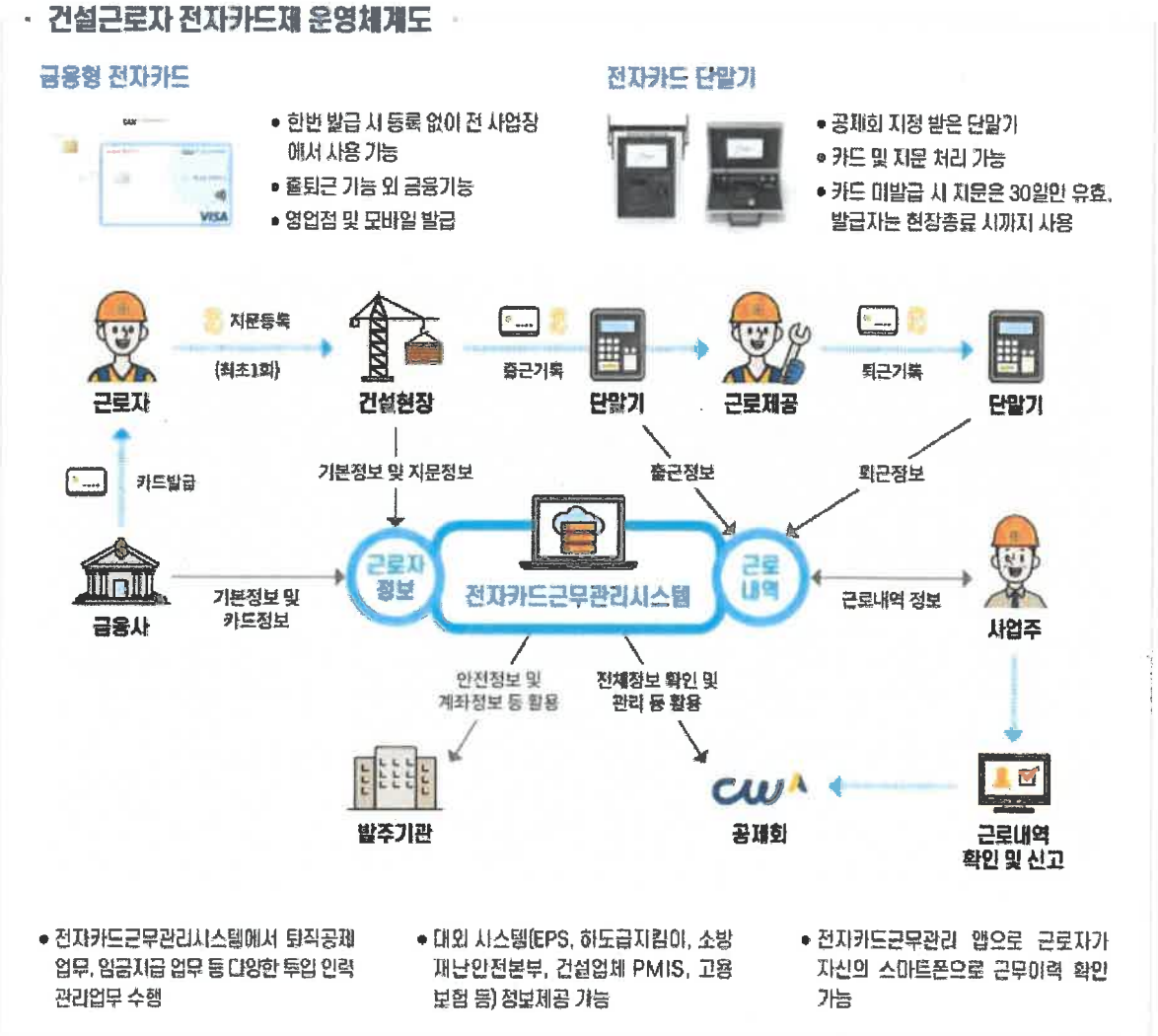
'22년 7월 1일부터 공공 50억, 민간 100억 이상 건설현장에 「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」 확대 시행됩니다!

1 전자카드제 개요

○ 건설근로자가 발급받은 전자카드를 전자카드 단말기에 태그하여 **출퇴근 내역을 직접 기록**하고,

- 이를 기반으로 건설사업주는 **건설근로자의 소속·직종, 출퇴근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**하고 **퇴직공제 신고 및 임금지급 등 건설근로자 고용관리**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

·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운영체계도



•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서 퇴직공제 업무, 임금지급 업무 등 다양한 투입 인력 관리업무 수행

• 대외 시스템(EPS, 하도급지킴이, 소방재난안전본부, 건설업체 PMIS, 고용보험 등) 정보제공 가능

• 전자카드근무관리 앱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근무이력 확인 가능

2 주요내용

□ 전자카드제 대상

○ **공사예정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**인 건설공사 중 **단계별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**한 공사 대상이며,

- **발주기관**은 입찰공고 등록 이전 **전자카드제 적용 여부 확인 후** 대상일 경우 **전자카드제 적용 안내 문구를 입찰공고문 상 기재**해야 함*

* 입찰공고문 작성 예시 붙임 참고

< 공사예정금액별 전자카드제 적용 구분 >

구분	1단계 시행 ('20년 11월 27일 이후)	**2단계 시행 ('22년 7월 1일 이후)**	3단계 시행 ('24년 1월 1일 이후)
공공공사	100억원 이상	**50억원 이상**	1억원 이상
민간공사	300억원 이상	**100억원 이상**	50억원 이상

※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**도급계약을 체결한 때**를 기준으로 함

□ 전자카드제 대상 건설공사 사업주 의무사항

○ **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**(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,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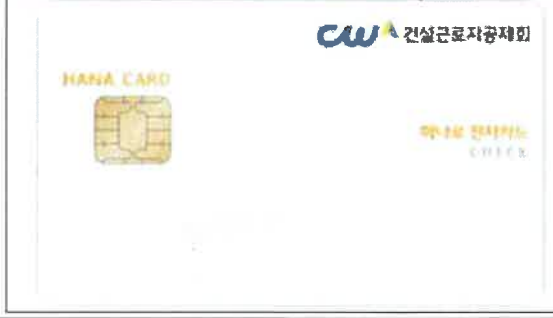
- **건설사업주**는 건설근로자(피공제자)에게 **전자카드를 발급**해야 하며, **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**하여 출·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함

< 건설근로자 전자카드(상품명 :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) >

■ 「금융실명법」을 적용받는 금융형 카드로써, **건설근로자의 정확한 개인정보 파악 및 양도·매매 등 부정 사용 방지**가 가능하며, 출퇴근 기록 외에도 결제 기능, 캐시백·적립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

■ **'하나은행'과 '우체국'에서 발급**하고 있으며, 가까운 창구방문 또는 비대면(모바일) 채널을 통해 발급 신청 가능

※ 신용불량자와 외국인도 문제없이 모두 발급가능 (단, 비대면 발급은 일부 제한)

하나은행	우체국
	

○ **전자카드 단말기 설치·운영(시행령 제10조의2제1항, 제12조의2제3항)**

- **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의 원수급인**은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**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운영**하여야 하며,

 · 단말기 설치·운영 비용은 **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비용**에서 정산 가능(직접노무비의 2.3%)

유형	부스형	벽부형	이동형	게이트형
이미지				

※ '22.6 현재 총 6개 업체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으며, **지정업체별 단말기 종류 및 가격, 설치 문의는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(ecard.cw.or.kr) 참고**

3 발주기관 역할

< 시점별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발주기관 주요 역할 >

시점	입찰공고 시점	⇒	공사 착공 시점	⇒	공사 시공 시점	⇒	공사 준공 시점
주요 내용	■ 입찰공고문 내 전자카드제 적용 안내 ■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 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·운영 비용 포함		■ 사업장 개설과 동시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지도 ■ 근로자 사업장 투입 시 전자카드 발급 여부 필수 확인 지도		■ 사업장 내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지도 ■ 미발급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방법 안내 및 사업주 교육 실시		■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 정산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·운영 비용 포함 정산
관계 법령	건설근로자법 제10조		건설근로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		건설근로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		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0조의2